국토교통부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월 일	2022. . .

1. 개정이유

탄소의 흡수·저장뿐만 아니라, 공원시설이 배출하는 탄소의 감축까지 고려한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등 장사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묘지공원의 건폐율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유지관리 세부기준에 대하여 수종 선택, 식재 방식, 공원시설 소재 에너지 사용 등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신설함(안 3-5-1. 안 3-5-2.)

나. 묘지공원의 건폐율 규정을 폐지함(안 4-2-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1561 호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절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유지관리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3-5-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1. 도시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부터 (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원 식생의 종류와 식재방식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 수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생의 생육여건, 도시공원 이용자 특성 및 탄소흡수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지피류로 구성된 다층식재로 계획함으로써 면적 대비 탄소흡수능을 높여야 한다.

(다) 지피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비용, 서식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를 선택한다.

(2) 공원시설물의 소재 및 형태, 에너지 사용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재된 탄소(탄소발자국)가 적은 소재를 우

선 선택한다.

(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체적 녹화,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과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공원시설물을 우선 고려한다.

(다) 조명시설이나 화장실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원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가능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부지 내 제로에너지 달성을 지향한다.

3-5-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2 도시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1)부터 (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목의 생육여건을 양호하게 관리함으로써, 탄소흡수를 포함한 수목의 다양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낮은 수목의 탄소흡수능이 노령화 등으로 낮아지는 경우, 탄소흡수능이 좋은 수종으로 갱신한다. 단, 베어낸 수목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목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원시설물을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는 3-5-1에서 제시된 공원시설물의 조성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4-2-4. 묘지공원 (1)의 (다) “묘지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상으로 한다.”를 “묘지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상

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제3장 --
제5절 <신 설>	제5절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유지관리 세부기준
<신 설>	3-5-1. 도시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신 설>	(1) 도시공원 식생의 종류와 식재방식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 수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생의 생육여건, 도시공원 이용자 특성 및 탄소흡수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지피류로 구성된 다층식재로 계획함으로써 면적 대비 탄소흡수능을 높여야 한다.
	(다) 지피류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비용, 서식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그 종류를 선택한다.
<신 설>	(2) 공원시설물의 소재 및 형

	태, 에너지 사용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재된 탄소(탄소발자국)가 적은 소재를 우선 선택한다. (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체적 녹화,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등과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의 공원시설물을 우선 고려한다. (다) 조명시설이나 화장실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원시설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가능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부지 내 제로에너지 달성을 지향한다.
<신 설>	3-5-2 도시공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신 설>	(1) 수목의 생육여건을 양호하게 관리함으로써, 탄소흡수를 포함한 수목의 다양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2) 생태적·심미적 가치가 낮은 수목의 탄소흡수능이 노령화 등으로 낮아지는 경우, 탄소흡수능이 좋은 수종으로 갱신한다. 단, 베어낸 수목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목재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 설>	(3) 공원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는 3-5-1에서 제시된 공원시설물의 조성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4장 --
4-2-4. 묘지공원	4-2-4. --
(1) 묘지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
(가) ~ (나) (생 략)	(가)~(나) (생 략)
(다) 묘지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 ----------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 이내로 하며,~~ ----------.